보도시점 2024. 2. 1.(목) 조간 배포 2024. 1. 31.(수) 09:00

불법추심 피해 서민에 변호사 무료 지원
'24년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본격 나서

- '23년도 불법대부·불법추심 피해 3,249건 무료 지원
- '24년도는 사업 시행 이후 최대 규모로 예산 확보
-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별도 입증자료 없이도 신청 가능

금년도 **채무자대리인** 무료 지원 사업이 **본격 시행**된다. 2월 1일 금융위원회는 '24년도 예산을 사업 시행 이후 **최대 규모로 확보***하고, 불법추심으로 고통받는 서민·취약계층이 보다 **쉽고 편리하게 무료 법률서비스**를 받을 수 있도록 **채무자대리인 제도**를 **개선**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.

* [사업 예산 규모(억원)] : ('21) 6.04 → ('22) 11.44 → ('23) 8.86 → ('24) 12.55

채무자대리인 사업은 2020년에 도입된 이후 불법대부·불법추심에 대응하여 **연 3,000 ~ 4,000여건***의 **법률서비스**를 **무료**로 **지원**하고 있으며, 매년 **예산이 조기에 소진**될 정도로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한 **대표적인 구제 제도**로 **자리매김**하고 있다.

* [채무자대리인 지원 실적(건)] : ('21) 4,841 → ('22) 4,510 → ('23) 3,249

■ **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**이란?

☞ **미등록·등록 대부업자**로부터 **불법 채권추심피해**(우려)가 있거나 **법정 최고금리**(연 20%) **초과 대출**을 받은 **서민·취약계층**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**무료 법률서비스**

❶ **(채무자대리)** 대한법률구조공단 **변호사**가 **채무자를 대신**해 전화 대응 등 **채권자의 추심과정**을 **일체 대리**

❷ **(소송대리) 최고금리 초과 대출,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**에 대한 **반환청구·손해배상·채무부존재확인 소송** 등을 **대리**(기준중위 소득 125% 이하 대상)

☞ **금감원 홈페이지, 불법사금융신고센터**(☎1332) 또는 **법률구조공단**(☎132)을 통해 신청

지난해 말 금융위원회가 **'불법사금융 실태 확인 및 사업 개선방안 마련'**을 위해 **채무자대리인 사업 이용자**를 대상으로 실시한 **설문조사**에 따르면, **이용자의 75%**가 "채무자대리인 **사업이 도움이 되었다**"라고 답했으며, 그 사유로 **"불법사금융 피해 대응 방법**을 **습득**할 수 있어서"(54.4%)라고 답한 바 있다.

<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의 도움 여부 및 사유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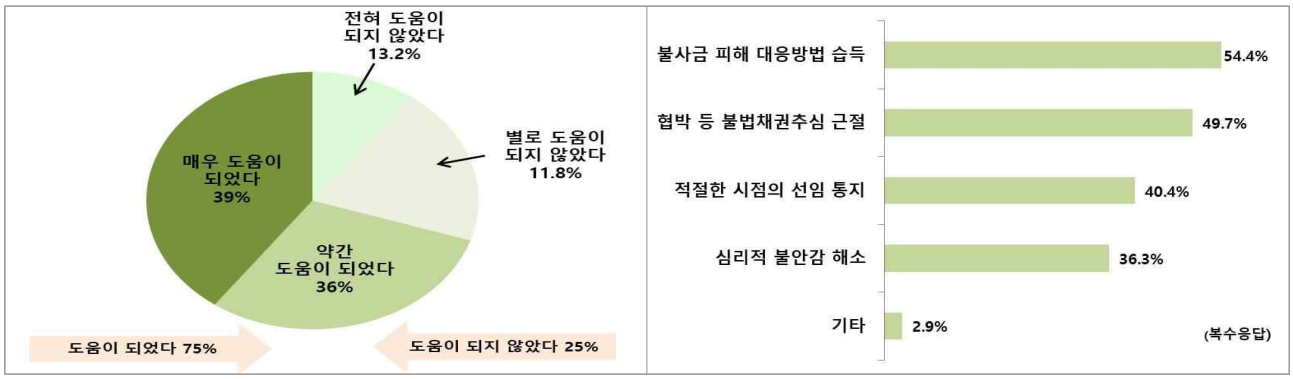

※ 출처 : 2023년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 이용자 실태조사(금융위)

정부는 이러한 **설문조사**와 **현장 의견**을 바탕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**보다 쉽고 편리하게**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
우선, 금융감독원의 **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과정**에서 불법대부·불법추심 **피해 사실**이나 **피해 우려**가 **확인**된 경우 신청인은 **별도의 입증자료가 없어도**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. 이에 따라, 신청인의 피해 **입증자료준비 부담**이 **줄어들고, 적시에 법률서비스가 지원**될 수 있을 전망이다.

둘째,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**신청 편의도 제고**된다. 서민금융진흥원은 **대출상담**시 불법사금융 피해(우려)가 확인되면, 대출상담자에게 **알림톡**이나 **문자메시지**를 통해 **'채무자대리인 신청 전용 페이지**(금융감독원)**' 링크**를 전송할 계획이다. 또한, 금융당국은 **법무부·대한법률구조공단**에서 **구축 중인 '법률구조플랫폼'**을 통해서도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.

셋째,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**신청하였으나 지원을 못받은 건,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이 한 차례 이루어졌으나 피해가 계속되는 건***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**분석·발굴**하여 **지원**한다는 계획이다.

* 채무자대리 기간은 6개월로 하되, 1차에 한하여 연장 가능(총 2회 이용 가능)

넷째,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**금전피해 회복**을 위한 손해배상소송 등 **소송대리 사업**도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. 채무자대리인 이용자 등이 불법추심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금전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소송대리 제도 안내를 강화하고, **사법당국**의 불법사금융 **수사단계**에서 피해자에게 **소송대리 사업**을 **적극 소개**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**협조체계**를 **강화**할 예정이다.

마지막으로,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**피해자**가 **동 서비스를 이용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** 금융당국은 채무자대리인 **이용현황 등**을 **주기적**으로 **점검·분석**해 나갈 계획이다.

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"악랄해지는 **불법사금융**으로부터 **더 많은 피해자를 보호**할 수 있도록 정부가 **더 촘촘하고 세밀하게** 살펴나가겠으며, **수요자의 의견**을 좀더 **귀 기울여 듣고 이들의 관점**에서 **서비스**를 **제공**하겠다"라고 밝혔다. 아울러, "자금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**설 명절**을 앞두고 불법사금융, 보이스피싱 등 서민들을 위협하는 **금융 범죄**가 **증가할 우려**가 있다"면서 **금융소비자**의 각별한 **주의**를 **당부**하였다.

금융당국은 「**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**」을 통해 불법사금융 수사·단속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, **서민금융공급 확대, 불법사금융 접근 차단, 불법·과잉추심 방지 및 피해구제** 등 **불법사금융 근절**을 위한 **다각적인 정책**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	책임자	과 장	전수한 (02-2100-2510)
		담당자	사무관	구은정 (02-2100-2513)
	금융감독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	책임자	국 장	홍석린 (02-3145-8270)
		담당자	팀 장	박재민 (02-3145-8129)
	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	책임자	부 장	백영종 (054-810-1061)
		담당자	팀 장	조동규 (054-810-1062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1 **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서비스 신청방법**

1. 전화 신청

□ **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**(국번없이 ☏1332) 또는 **대한법률구조공단**(국번없이 ☏132)을 통해 신청 가능

2. 온라인 신청

□ **금융감독원 홈페이지**(www.fss.or.kr > 민원·신고) **'불법금융신고센터'**

○ 불법금융신고센터 내 "**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**"을 클릭하면 신청 화면에 접속 가능

<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 內 신청 화면 >

3. 오프라인 신청

□ **대한법률구조공단 18개 지부 및 42개 출장소**

○ **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**(www.klac.or.kr > 주요서비스) **'전국 사무소 이용 안내'**에서 확인 가능

참고2 **불법사금융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**

1. 대출 수요 발생시

□ 이용 가능한 정책서민금융 상품*이 있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

* **(확인방법)**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(fine.fss.or.kr) → '서민·중소기업' 메뉴 → 서민금융1332 등

< 파인(Fine.fss.or.kr) 메인 화면 중 '서민금융상품' 등 확인 방법 >

□ 대출 상담시에는 대출업체가 **'제도권 금융회사'** 또는 **'등록대부업자'** 인지 여부*를 반드시 확인

* **(확인방법)**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(fine.fss.or.kr) → 금융회사 → '제도권금융회사 조회' 또는 '등록대부업체통합관리'

< 파인(Fine.fss.or.kr) 메인 화면 중 '제도권 금융회사' 확인 방법 >

2. 대출계약시

□ **대부계약서**를 반드시 작성하고 **입출금 거래내역** 등을 **꼼꼼히 기록**하는 한편, 이자율이 **법정 최고금리*를 초과**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

* '21. 7. 7. 이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, 연장되는 계약에 대해 연 20% 적용 ('21. 7. 7. 이전에는 연 24%)

○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**대출시 공제하는 금액은 원금에서 차감**하여 이자율을 계산하며,

○ 중개수수료, 공증료 등 명칭에 불문하고 **대출과 관련하여 대부자가 받은 돈**은 **모두 이자**로 간주

< 선이자 등 지급시 이자율 계산 사례 >

☑ 대부업자 갑은 급전이 필요한 을에게 100만원을 대출해주면서 대출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만원을 공제한 80만원만 지급, 1개월 후 100만원을 수취

- 원금 : 80만원
- 이자 : 20만원(=1개월 후 지급한 100만원 – 최초 지급받은 80만원)
- 1개월 이자율 : 25%(=20만원/80만원×100)
- 연 이자율 : 300%(=1개월 이자율×12)

→ 수취 이자율은 **연 300%로** 최고금리(현재 연 20%) 위반

3. 최고 금리 위반 및 불법추심 등 피해 발생시

□ **미등록·등록 대부업자**와의 **대부 거래**에 있어 **불법추심, 최고금리 위반 피해**가 발생하였거나 **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**

○ **입출금 자료 등 거래 내역**을 **확보**하고, 통화 및 문자기록, 녹취 등 **채권 추심과정에 대한 증빙자료**를 확보

○ **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**(☏1332에 3번) 또는 **대한법률구조공단**(☏132)으로 「**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**」 무료 지원 신청